

붙임 2**디딤돌(지역 창업 허브 연계) 세부 지원내용****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창업허브(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선정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지원규모 : 150억원, 250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유형	접수기관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지역 창업 허브 연계	자유공고	운영기관*	250개 내외

* 17개 시도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범위 <참고 1> 확인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 25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 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분	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및 유의사항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023. 2. 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50%이상 부담 → 10% 이상 부담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3	27	30	15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2.0	18.0	20.0	100

* 연구개발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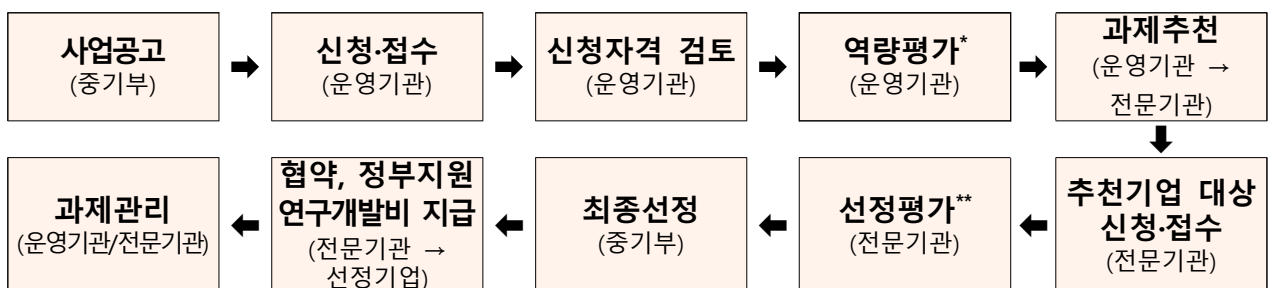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3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30백만원)의 10%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역량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가능하며, 전문기관으로 신청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5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역량평가(5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70점, 특화지표 항목 3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text{평가점수} = \frac{\text{역량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역량평가 시 평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70점)	기술성	• 기술개발방향의 적정성	10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 연구개발역량	15	
	개발결과 활용 가능성	• 경제적 효과	5	
		• 기술적 효과	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	5	
	센터 특화지표(30점)			30

* 역량평가 시 공통 평가지표 70점,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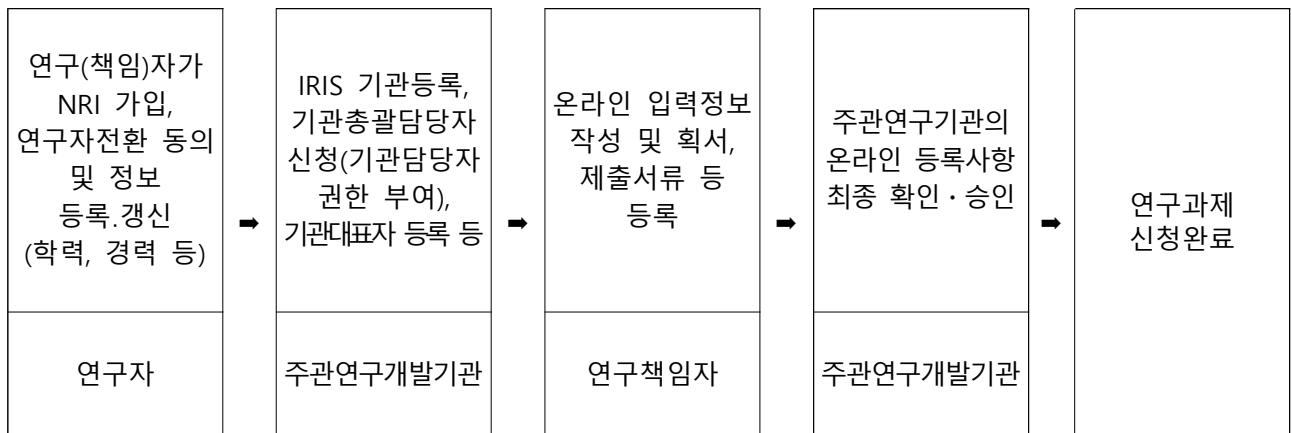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5월)

- 운영기관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2 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6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전문기관) 지원제외 사항 검토(6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연구 개발계획서 및 가점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이 지원 제외 사항(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6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역량,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확인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평가표 >

평가지표	배점
•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	30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30
• 연구개발역량	30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지원과제 확정(7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개발의 창의성 및 계획의 충실성>사업화 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역량>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평가위원단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 \cdot \text{감점}$$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 **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캡처본 ***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22년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가점관련 증비서류는 운영기관 추천 과제에 한해 IRIS 접수 시 제출

4. 기타사항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센터 고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하여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1,500천원" 계상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운영기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역량)평가, 유의사항 관련 문의 등	033-248-7942 033-248-794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74 031-780-907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71 055-291-9309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38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5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638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93 042-385-079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41 051-749-8945 051-749-8957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261 02-739-7328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238 044-999-3303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22-9015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31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5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4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9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71 041-536-7853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참고 1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

① 대분류(C), ② 중분류(C33), ③ 소분류(C339), ④ 세분류(C3399), ⑤ 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 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성과창출 강화 항목은 이를 초과하여 별도 적용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1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1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